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2020.08.13. 제정

제 1 조(설치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 3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수위원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운영과 행사의 준비와 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스페셜올림픽이 추구하는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를 구축을 위한 통합세대(Unified Generation)로 소속 학교,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스페셜올림픽을 홍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영향력을 행사
- ③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대표하는 주요 구성원으로 각종 행사의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홍보위원, 행정위원, 준비위원을 비롯하여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대변인, 홍보위원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스페셜올림픽 무브먼트 전파
- ④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비롯한 국내외 각종 선수위원회 활동 참여와 정보 교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⑤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 ⑥ 기타 선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발달장애인 선수 6인 (스포츠 선수 4인, 문화예술 아티스트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메신저 1인, 선수 위원회 위원장 1인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고, 스포츠선수 1인과 문화예술 아티스트 1인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의원 총회 대의원으로 선임)

2. 비장애인 파트너 6인 (발달장애인 스포츠 선수 및 아티스트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또래의 비장애인)
 3. 성인 멘토 6인 (지도자, 코치, 교사 등)
 4. 디지털 참여 위원 6인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온라인 활동 가능한 비장애인)
 5. 담당 코디네이터 1인 (외부 전문 인력)
- ② 위원회의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해당 사업부 담당 직원이 담당한다.

- 제 5 조(임원의 선출방식)** ① 발달장애인 선수는 해당 사업본부 (스포츠, 문화예술)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선수위원 심사단을 구성하여 선별
- ② 비장애인 파트너는 선수위원회 발달장애인 위원을 선임 후, 임원으로 선임된 발달장애인 선수가 비장애인 파트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선임하거나 추천자가 없을 시 외부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내부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별
- ③ 성인 멘토는 외부 공모를 통해 자진 추천 및 추천을 통해 모집, 내부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별
- ④ 디지털 참여 위원은 스포셜올림픽 동아시아지부의 디지털 참여 위원회 신청자의 서류 심사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비장애인 청소년 6명~10명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활동 여부 확인 후 선별 (디지털 참여 위원의 경우는 1년 임기 기간으로 온라인상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 완료 시점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 지속적 모집과 선별 진행)
- ⑤ 담당 코디네이터는 해당 위원회의 필요와 운영 예산 상황에 따라 외부 공모를 통해 단기계약직 1명을 채용
- ⑥ 위원회는 국내외 행사 참여와 해당 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간사를 1인을 두며, 해당 사업부 담당 직원을 임명

- 제 6 조(임무)** ① 스포셜올림픽코리아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한다.
- ②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선수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관한 의무를 실행한다.

④ 선수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이사회,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7 조(위원회 탈퇴) ① 위원회의 회원은 본인의 건강상 이유나 개인 사유에 따라 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원 탈퇴 시 제 5조 임원선출 방식에 따라 보선 위원을 선출한다.

제 8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해촉) SOK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이 질병, 국외 이주,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 및 위원회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수당·활동비·여비 지급 등) 위원회 회의,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비롯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선수위원회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활동비,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기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기간, 청소년리더십 회의와 관련 행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주요 행사 기간 중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시행한다.

제14조(서면결의)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민법상 미성년 (만 19세 미만)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결의할 수 있다.

제15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및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주관부서)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관련 활동에 관한 업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에 준한다.

부 칙 (2020. 08. 1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